

# “종합건설업체 불법행위만 양산, 실패한 제도”

● ‘원도급자 직접시공 의무 확대’ 이어서 문제다

## 지난 4년 직접시공 불이행 적발 총120만건 중 불과 5건 법안 확정때 전문 물량 절반 잠식 “건설산업 기반붕괴”

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주최한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직접시공의무 확대에 절대 반대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장광근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건설법 개정안은 현행법령상 30억원 미만공사의 30%를 직접시공하도록 한 규정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경우 20% 이상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경우 30% 이상 △500억원 미만의 경우 50%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서 이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시장논리에 반하는 실패한 규제 = 직접시공제를 도입한 목적은 페이퍼컴퍼니 퇴출이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종합업체 일부가 감소한 것은 등록기준 강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오히려 페이퍼컴퍼니 퇴출은 이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입·낙찰제도의 변별력강화와 보증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뿐 아니라 제도 시행후 직접시공 불이행으로 적발된 것은 총 120만건 중 5건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위장직영 등 불법행위만 양산한 실패한 제도이므로 확대가 아니라 즉시 폐지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취지에 위배 = 건설법의 취지는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은 세부 공종별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시공을 확대하면 종합업체가 직접 모든 것을 다 하게 돼 전문건설

업은 준립기반 조차 상실하게 된다. 종합·전문 겸업금지 제한까지 폐지한 상태에서 직접시공을 확대한다는 것은 건설법 스스로가 상반되는 규제를 동시에 허용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부작용만 양산한 최악의 제도 = 직접시공 기능이 없는 종합건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니 불법 하도급, 위장직영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위장직영이 이뤄지면 하도급자는 정식 계약서도 없어 하도급법 등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돼 불법만 더욱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즉 저가하도급심사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같은 하도급자 보호 관련 규정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 뿐 아니라 위장직영에 따라 하도급받아 직접 시공하고도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전문건설업체가 중견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게 된다.

◇전문건설 물량 잠식 = 법안이 확정되면 전문건설 하도급물량 52조 5000억원의 절반인 25조 6000억원 정도가 종합업체가 직접시공하게 된다. 이것은 건설업의 특성 즉 전문화와 분업화는 물론 시공 전문업체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건설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불필요한 행정부담 초래 = 전문공사의 경우 300억원 미만공사가 전체 계약건수의 99.99%에 이르는데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이를 발주자에게 모두 통보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초래된다. 발주자 역시 통보받는 직접시공계획서가 종합·전문공사를 합쳐 연간 약 40만건에 달해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설산업 선진화에 역행 = 이미

실패한 ‘반 시장적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선진화가 아니라 오히려 후진화 시키는 것이다. 자유로운 시공방법 선택을 제한하는 직접시공의 무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선진화인데 거꾸로 역행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종합건설업체들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과 대의도 명분도 없는 이전투구를 부추기는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전상곤 기자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확대는 전문건설 하도급물량 절반이상을 잠식시켜 전문건설업의 준립기반을 상실하게 만들고 시장 논리에도 반하는 실패한 규제라고 전문건설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업체 관계자들이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또 전문업체 승소 판결

대법원은 전문건설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시공참여자 고용 일용근로자분 건강보험료 부과취소소송에서 또다시 전문건설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주)원전건설(대표 김정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건(2009두23631)에 대해 지난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28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철근공사 전문업체인 효국건설(주)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건에서 역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 제기자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원전건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1월25일 내린 “시참자 고용 근로자를 전문건설업체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판결이 됐다.

서울고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료를 부과한 공단에 있는데, 공단은 전문건설업체와 시공참여자 고용한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고 그들의 보수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보험료 2억1322만8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반상규 기자

## 장광근의원 “반대의견 강한 것 알고 있어” 전문건설업계 조용한 플래카드시위 눈길

‘원도급자 직접시공 의무 확대’ 토론회 이모저모

지난 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는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윤성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 원희룡 의원, 나경원 의원 외 다수 국회의원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류영창 코스카 중앙회 부회장, 박상규 건설협회 부회장 등 정·관·학·산업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윤성 부의장과 박희태 전 대

표, 권도엽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현명한 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광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대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허용 정도와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

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용인원 150명 규모의 소회의실에 입주의 여지도 없이 뻘뻘이 들어찬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종합업계를 대표해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이 ‘품질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의

직접시공 촉진 방안’을, 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책임연구원이 ‘직접시공의무 규제철폐로 건설생산 방식 효율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심규범 연구위원이 발표할 때는 전문건설업계 참석자들이 ‘위장직영 양산하는 직접시공 철폐하라’,

‘건설법상 역할무시 건설법도 폐지하라’, ‘전문업자 말하는 직접시공 철폐하라’, ‘실행능력 없는 종합 위장직영 불법하도’, ‘종합업자 직접시공 전문업자 무용지물’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조용히 반대시위를 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김준환 포스코 경영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도태호 국토부 건설정책관, 이서구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차장, 백석근 건설노조 전위원장, 윤동호 동방종합건설 대표,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반상규 기자